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 목차

<b>1. 개요</b>	<b>3</b>
1.1 이 사건의 헌법소원 배경	3
1.2 의견서 요약	4
<b>2. 생명권과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형제도</b>	<b>5</b>
2.1 사형제도 폐지: 국제법에 명시된 목표	5
2.2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유엔 기구들의 전향적 변화	6
2.3 개별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된 사형제도 폐지 비전	7
2.4 가장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 새로운 규범의 출현	9
<b>3. 국가 현황: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뚜렷한 추세</b>	<b>11</b>
3.1 확산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 추세	11
3.2 사형존치국: 고립된 소수	13
3.3 사형: 본질적으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처벌	14
3.3.1 취약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	14
3.3.2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위험	16
3.4 입증된 바 없는 범죄 억제 효과	16
<b>4. 대체 형벌</b>	<b>19</b>
<b>5. 결론</b>	<b>20</b>

# 1. 개요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관련 헌법소원심판사건(사건번호: 2019 헌바 59)에 대한 참고인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7 백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조직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 향상을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활동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에 걸쳐 국가의 사법 활동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모니터링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합니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혹한·비인도적인 형벌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스톡홀름 선언(Stockholm Declaration)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1977 년 12 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sup>1</sup>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원과 개별 국가 법원이 국제법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해결하는 데 조력하고자 참고의견서 및 제 3 자 의견서를 제출한 경험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1997 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으며, 국제앰네스티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는 대한민국의 사형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제 10 조, 제 34 조 제 1 항, 제 37 조 제 1 항, 제 37 조 제 2 항)과 국제법, 국제 인권 기준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밝힙니다.<sup>2</sup>

## 1.1 이 사건의 헌법소원 배경

원고("K", 30 세 남성)는 존속 살해 혐의[2018 고합 158, 159(병합), 200(병합)]에 대해 2018 년 12 월 28 일 대한민국 형법 제 250 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K 는 서울고등법원에 유죄판결과 선고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2018 년 11 월 20 일, 원고는 유죄판결 전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형제도를 규정한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2018 년 12 월 28 일 해당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으며(2018 초기 659), K 는 2019 년 1 월 14 일 이 결정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sup>1</sup> 국제앰네스티, 사형 폐지에 대한 국제회의, 스톡홀름 선언, 문서번호: ACT50/001/1977, [www.amnesty.org/download/Documents/204000/act500011977en.pdf](http://www.amnesty.org/download/Documents/204000/act500011977en.pdf)

<sup>2</sup> 사형 집행 국가 분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 참조. 사형 폐지 국가와 존속 국가(Abolitionist and retentionist countries), 문서번호: ACT 50/6665/2017, [www.amnesty.org/en/documents/act50/6665/2017/en/](http://www.amnesty.org/en/documents/act50/6665/2017/en/)

원고는 2019 년 2 월 12 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sup>3</sup> 헌법재판소는 심판회부 결정을 내리며 다음 사항들에 대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형제도가 대한민국 헌법 제 10 조, 제 12 조 제 1 항, 제 110 조 제 4 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 사형제도가 헌법 제 10 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는지 여부
- 사형제도가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 명시된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사형제도가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 명시된 생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 형법 제 41 조 제 1 항이 위헌인지 여부
- 형법 제 72 조 제 1 항에 명시된 가석방 요건이 합헌인지 여부

## 1.2 의견서 요약

국제앰네스티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참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논증합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며, 이러한 취지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발전 과정에 반영되어 온 것이기도 합니다.

- 사형제도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현황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전 세계의 압도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 사형을 유지하는 국가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사형제도는 본질적으로 자의적이고 취약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며, 오판 가능성을 가진 사법 시스템에 의해 관리됩니다.
- 사형제도는 특별한 범죄 억제 효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국제 인권법과 기준은 대체 형벌 도입에 관한 목적과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sup>3</sup>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신문*, 2019년 2월 13일, [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882013.html](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882013.html)

## 2. 생명권과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형제도

생명권과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 3 조와 제 5 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수의 국제인권법, 다양한 지역인권기구, 개별 국가의 헌법 및 법률 또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가 이러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며, 국가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법률 체계 또한 지난 수년 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sup>4</sup> 모든 사형의 집행은 이를 집행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그 사회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977 년 스톡홀름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했습니다.

“사형집행은 폭력행위이며, 폭력은 폭력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 사형의 부과는 그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 국가는 그 사법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예외 없이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sup>5</sup>

### 2.1 사형제도 폐지: 국제법에 명시된 목표

사형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국제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990 년 발효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 제 6 조는 특정 제한 조건하에서만 사형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 조 제 6 항에는 이 조항이 “사형제도 폐지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이 규약의 해석을 위임한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최근 발표한 자유권규약 제 6 조 일반논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자유권규약 제 6 조 제 6 항은 아직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 국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사실상 그리고 사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나아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으며,

<sup>4</sup> 본 문서 3.3 참조.

<sup>5</sup> 국제앰네스티, 사형 폐지에 대한 국제회의, 스톡홀름 선언, 문서번호: ACT 50/001/1977.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간 존엄의 강화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sup>6</sup>

사형제도 폐지를 채택한 여러 국제 조약과 규약 또는 최소 사형의 획기적인 감소는 국제사회가 사형제도를 형사사법 문제에서 인권 문제로 바라본다는 전향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조약과 규약들은 사형 허용 범위를 좁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형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형태의 처벌이라는 인식을 명시하는 데까지 나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형제도 폐지가 규정된 국제 및 지역 조약은 4 개입니다.

-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는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며 1989 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문제를 마지막으로 논의한 2010 년 2 월<sup>7</sup> 이후에도 더 많은 유엔 회원국들과 한 개의 비회원 옵서버 국가가 이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sup>8</sup> 앙골라 또한 이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이하 유럽인권협약) 제 6 의정서 및 제 13 의정서가 1982 년과 2002 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채택되었습니다.<sup>9</sup>
-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의정서가 1990 년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2015 년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의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추가 의정서를 작성하고 채택했습니다. 현재 이 의정서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의 논의와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sup>10</sup>

## 2.2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유엔 기구들의 전향적 변화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진전은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립법을 고려할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설립된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도쿄 재판소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전 세계에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8 개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sup>6</sup> 자유권규약 제 6 조, 생명권에 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 36 호(2018), UN Doc. CCPR/C/GC/36, para.50.

<sup>7</sup> 헌법재판소, 22-1(A) KCCR 36, 2008 헌가 23, 2010 년 2 월 25 일 판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결, 2011, p. 1

<sup>8</sup> 이 의정서에 가입한 14 개 유엔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베냉, 볼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가봉, 감비아, 기니비사우,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마다가스카르, 몽골, 폴란드, 상투메프린시페, 토고. 팔레스타인 또한 2019 년에 가입했다.

<sup>9</sup> 러시아 연방은 제 6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유럽회의 회원국이다(하지만 협약에는 서명했다).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연방은 제 13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두 국가이다.

<sup>10</sup>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제 56 차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정기 회의 최종 공표(Final Communiqué of the 56th Ordinary Session of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2015 년 5 월 7 일, para.33, [www.achpr.org/sessions/info?id=218](http://www.achpr.org/sessions/info?id=218)

그러나 그 이후, 즉 1993년부터 설립된 모든 국제형사법원의 설립문서가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 등 모든 국제법상 범죄에 대해 재판소가 부과할 수 있는 처벌에서 사형을 배제했습니다. 이러한 설립문서로는 122 개국이 비준한 국제형사법원의 로마규정,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시에라리온 특별법원 규정, 동티모르의 딜리지역 중대 범죄에 관한 특별패널을 설치하는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규정, 캄보디아 법원 내의 특별재판부법이 있습니다.

유엔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또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인권을 도덕의 나침반으로 삼아 행동해야 합니다. 이 나침반은 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안정적인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sup>11</sup>**

지난 수년 동안, 유엔은 사형 집행을 줄이고 사형 선고와 집행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더 최근에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국가 법률에서 사형 제도를 제외할 것을 단호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및 그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모두 사형 선고와 집행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데 기여해왔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나갈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84년 모든 사형 사건에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한 ‘사형수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유엔 기준(Safeguards Guaranteeing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ose Facing the Death Penalty)’을 채택했습니다.<sup>12</sup> 이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난 후, 유엔 총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sup>13</sup>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는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유엔 총회에서 이뤄진 최초의 역사적 결정이었습니다.

## 2.3 개별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된 사형제도 폐지 비전

국제법상 사형제도 폐지론의 강화는 수많은 국가들의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도 반영되어 왔습니다. 1996년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의 헌법을 조사했으며, 당시 57개 사형 폐지 국가들 중 24개국만이 헌법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sup>14</sup> 최근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폐지 국가 106개 중 56개국만이 헌법에 사형제도 폐지를 명시하고

---

<sup>11</sup> 세계 사형 반대의 날, 반기문 사무총장 연설 ‘사형이 완전히 폐지된 21세기’, UN News, 2016년 10월 10일, <https://news.un.org/en/story/2016/10/542302-world-day-against-death-penalty-ban-says-practice-has-no-place-21st-century>

<sup>12</sup> 사형에 직면한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엔 보장조항,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합의로 채택. 결의안 1984/50, 1984년 5월 25일.

<sup>13</sup> 유엔 총회 결의안 62/149(2007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지역 간 협력의 확대를 위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관한 6개의 다른 결의안들을 추가로 채택했다. 결의안 63/168(2008년 12월 18일), 결의안 65/206(2010년 12월 20일), 결의안 67/176(2012년 12월 21일), 결의안 69/186(2014년 12월 18일), 결의안 71/187(2016년 12월 19일) 및 결의안 73/175(2018년 12월 17일).

<sup>14</sup> 국제앰네스티, 사형에 관한 헌법 조항, 문서번호: ACT 50/006/1996, 1996년 5월 31일,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CT50/006/1996/en/>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sup>15</sup> 이외에도 부르키나파소가 2020년 신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 초안의 제 5조에 사형 폐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sup>16</sup>

사형이 헌법과 그 국가가 발효한 국제 규약 및 조약으로 보호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각국 법원의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1995년 6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사형 제도가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sup>17</sup> 헌법재판관 11명 중 8명은 또한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권에 기초한 사회에 헌신하기로 한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권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형사 처벌 방법을 비롯해 국가의 모든 사법 활동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이는 사형이 살인 같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기를 기대하며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살인자를 물건처럼 취급하며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 복수는 생명과 존엄에 대한 권리를 다른 모든 권리보다 중시하는 우리의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 사형이 종신형과 같은 다른 대체 형벌보다 살인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실제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입증된 바 없다. 이와 더불어 사형 선고 및 집행의 자의성과 오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살인에 대한 형벌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어야 할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는 성립된 바 없다.”<sup>18</sup>
- 2012년 8월 4일 **베냉** 헌법재판소는 베냉 정부가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며 “이제 어떠한 법률 조항에도 사형이 언급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sup>19</sup> 이 결정에 따라 2012년 12월 17일 베냉 국회는 형사소송법에서 사형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주목할 사례가 또 있습니다. 2016년 1월 21일 베냉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하며 베냉 공화국이 이를 비준한 것은 “형사법을 포함해서 사형을 처벌로 규정한 모든 법률 조항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sup>20</sup>
- 2015년 8월 25일 미국 코네티컷주 대법원은 사형제도 적용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sup>21</sup> 2012년 이후 사건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기로 하며 주 의회는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형이라는 고비용의 불만족스럽고 이상한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의지”라고 표명했습니다. 이를 인용하며

<sup>15</sup> 안도라, 앙골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콜롬비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지부티,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셜제도, 멕시코, 마이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sup>16</sup> 부르키나파소 헌법위원회, 제 5 공화국 헌법 초안, [www.rtb.bf/wp-content/uploads/2017/01/Avant-projet-Constitution-der-der.pdf](http://www.rtb.bf/wp-content/uploads/2017/01/Avant-projet-Constitution-der-der.pdf)

<sup>17</sup>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남아공 대 마콰얀과 므추누(*The State v. Makwanyane and Mchunu*), Case No. CCT/3/94.

<sup>18</sup> 남아공 대 므추누, 144-146 단락.

<sup>19</sup> 베냉 헌법재판소 판결 DCC 12-153.

<sup>20</sup> 베냉 헌법재판소 판결 DCC 16-020.

<sup>21</sup> 코네티컷주 대법원, 코네티컷주 대 에두아르도 산티아고(*State of Connecticut v. Eduardo Santiago*), 318 Conn.1, 122 A.3d 1 (2015).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형과 관련해 많은 문제를 겪었던 코네티컷주의 오랜 역사, 대체 형벌의 점진적인 도입과 증가, 형벌로써 사형이 교정학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증거의 축적, 사형 집행의 비밀관성, 사형이 거의 집행되지 않는 현실 및 모든 사형에는 본질적으로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과 사형의 집행과 선고 과정에 민족적, 인종적 및 사회경제적 편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했다. 기존 법제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형태의 사형제도는 코네티컷주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정한다.”<sup>22</sup>

- 2017년 10월 24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사형 선고를 허용하는 형법과 마약금지법의 조항들이 미주인권협약에 명시된 적법성 및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이 협약을 비준한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데 이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과테말라가 미주인권협약에 명시된 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고 기존 법령을 개정할 책임이 있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sup>23</sup>
- 2018년 10월 11일,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이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워싱턴은 미국 내에서 스무 번 째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가 되었습니다.<sup>24</sup> 워싱턴주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범행 장소, 피고의 거주 국가, 피고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 또는 피고인의 인종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sup>25</sup>, “선고 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되거나 인종주의적 편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sup>26</sup>, “‘성숙한 사회의 진보를 보여주는 품위의 발전하는 기준’과 양립할 수 없다”<sup>27</sup>고 판단했습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형제도가 응징과 범죄 억제라는 교정학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sup>28</sup> 또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지역 및 국가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사형제도 폐지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사형이 자의적이고 인종주의적으로 편향된 방식으로 부과될 때, 그 사회의 품위는 더 크게 훼손된다. 현재의 사형에 대한 법률 조항은 ‘근본적인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워싱턴주 헌법 제 I 조 제 14 항을 위반하는 것이다.”<sup>29</sup>

## 2.4 가장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 새로운 규범의 출현

사형 집행 방식<sup>30</sup>, 사형수와 그 가족에게 집행일을 제 때 알려주지 않는 것<sup>31</sup> 등 사형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이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오래

<sup>22</sup> 코네티컷주 대 에두아르도 산티아고, 318 Conn.1, section V

<sup>23</sup>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Case file 5986-2016

<sup>24</sup> 워싱턴주 대법원, State of Washington v. Allen Eugene Gregory (No. 88086-7), (2018)

<sup>25</sup> 워싱턴주 대법원 State of Washington v. Allen Eugene Gregory (No. 88086-7), p.1

<sup>26</sup> 워싱턴주 대법원 State of Washington v. Allen Eugene Gregory (No. 88086-7), p.19

<sup>27</sup> 워싱턴주 대법원 State of Washington v. Allen Eugene Gregory (No. 88086-7), p.25

<sup>28</sup> 워싱턴주 대법원 State of Washington v. Allen Eugene Gregory (No. 88086-7), p.26

<sup>29</sup> 워싱턴주 대법원 State of Washington v. Allen Eugene Gregory (No. 88086-7), p.25

<sup>30</sup>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킨들러 대 캐나다(*Kindler v Canada*), 통보 No.470/1991, UN Doc. CCPR/C/48/D/470/1991, 1993년 11월 11일, para.15.3

전부터 잘 알려진 것이었지만, 수년 전부터는 특정 관행이나 조건 혹은 집행 방법 등에 관계없이 사형제도 자체가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2 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유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국제관습법에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새로운 규범이 등장했는지 혹은 등장하고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률에 의해 선고되는 사형과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부과가 완전히 양립할 수 없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를 주저해온 기관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sup>32</sup> “점점 더 많은 국가의 헌법재판소와 정치인들이 사형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와 상충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에 해당한다는 신념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법기구 안에서 사형은 그 자체로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는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이미 확립된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본 특별보고관은 모든 상황에서의 사형을 금지하는 관습 규범이 기존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고 해도, 현재 형성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력히 믿는다.”<sup>33</sup>

2018 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또한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유권규약 제 6 조 제 2 항의 사형제도 적용에 대한 내용은 이 규약이 제정될 당시 이 규약에 서명한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사형제도를 그 자체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로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지만, 이후 회원국들이 체결한 후속 협약 또는 이러한 협약에 따른 행위들은 궁극적으로 상황에 관계없이 사형이 해당 규약 제 7 조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른 국제 협약을 비롯하여 제 2 선택의정서 당사국 중 사형 선고와 집행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을 적용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형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이라는 당사국 간의 합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법률적 발전은 해당 규약의 사형제도 폐지 취지에 부합하며, 특히 이러한 취지는 해당 규약 제 6 조 제 6 항과 제 2 선택의정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sup>34</sup>

국제법의 발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형제도가 인권 문제라는 이해를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사형제도는 그 존재만으로 생명권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sup>31</sup>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블라디슬라브 코발레브 외 대 벨라루스(*Vladislav Kovalev et al. v Belarus*), 통보 No.2120/2011, UN Doc. CCPR/C/106/D/2120/2011, 2012 년 11 월 27 일, para. 11.10

<sup>32</sup>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중간 보고, UN Doc. A/67/279, 2012 년 8 월 9 일, para. 66.

<sup>33</sup> UN Doc. A/67/279, para. 72.

<sup>34</sup>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자유권규약 제 6 조, 생명권에 관한 일반 논평 제 36 호(2018), UN Doc. CCPR/C/GC/36, para. 50.

## 3. 국가 현황:

#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뚜렷한 추세

국가 현황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때로는 후퇴하기도 했으나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 집행되는 사형 건수가 매년 전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3.1 확산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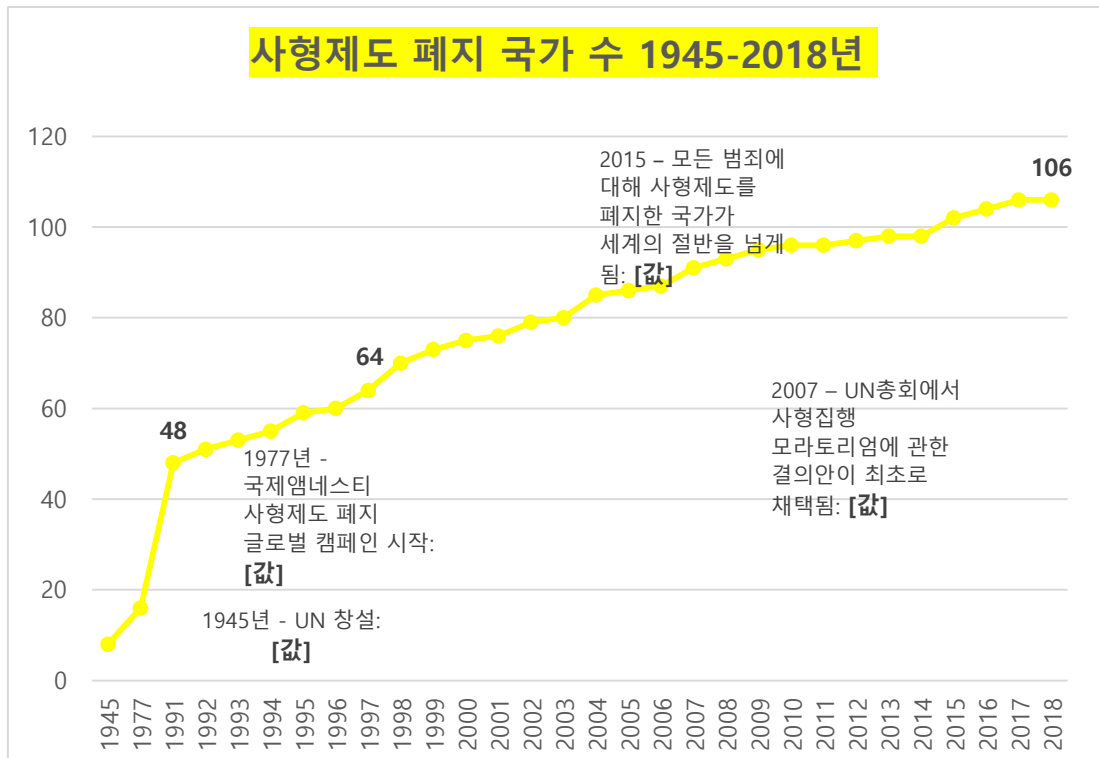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0 년이 지난 지금,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3 분의 2 가 넘는 142 개국이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했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sup>35</sup>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 년 이전에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이미 폐지한 나라는 콜롬비아(1910), 코스타리카(1877), 에콰도르(1906), 아이슬란드(1928), 파나마(1922), 산마리노(1865), 우루과이(1907), 베네수엘라(1863) 등 8 개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 1977 년 당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6 개 국에 불과했습니다. 2015 년에는 다수의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다음 차트 참조).

---

<sup>35</sup> 자세한 정보는 다음 자료 참조. 국제앰네스티, 사형제도 폐지 국가와 유지 국가(*Abolitionist and retentionist countries*) (2018 년 3 월 기준), 문서번호: ACT 50/6665/2017, 2018 년 3 월 5 일, [www.amnesty.org/en/documents/act50/6665/2017/en/](http://www.amnesty.org/en/documents/act50/6665/2017/en/)



2019년 8월 현재, 106 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전 세계 국가 중 70% 이상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을 통해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 중 30 개국 이상이 21 세기에 들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2010년 2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다룬 이후, 베냉, 콩고공화국, 피지, 기니, 라트비아, 마다가스카르, 몽골, 나우루, 수리남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부르키나파소와 과테말라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일리노이주, 메릴랜드주,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그리고 워싱턴주가 2000년 이후에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오리건주 및 펜실베이니아주의 주지사들은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위에서 강조한 세계적 추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법률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22 개국 중 9 개국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피지와 나우루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한 이후 파푸아뉴기니와 통가만이 법률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들 중 사형을 선고한 것은 파푸아뉴기니뿐이며, 법원이 사형제도가 파푸아뉴기니 헌법에 명시된 보장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한 후에는 사형 집행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니와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과테말라는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2018년 2월 감비아에서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sup>36</sup> 감비아는 2012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지만, 새 행정부가 2017년 9월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형제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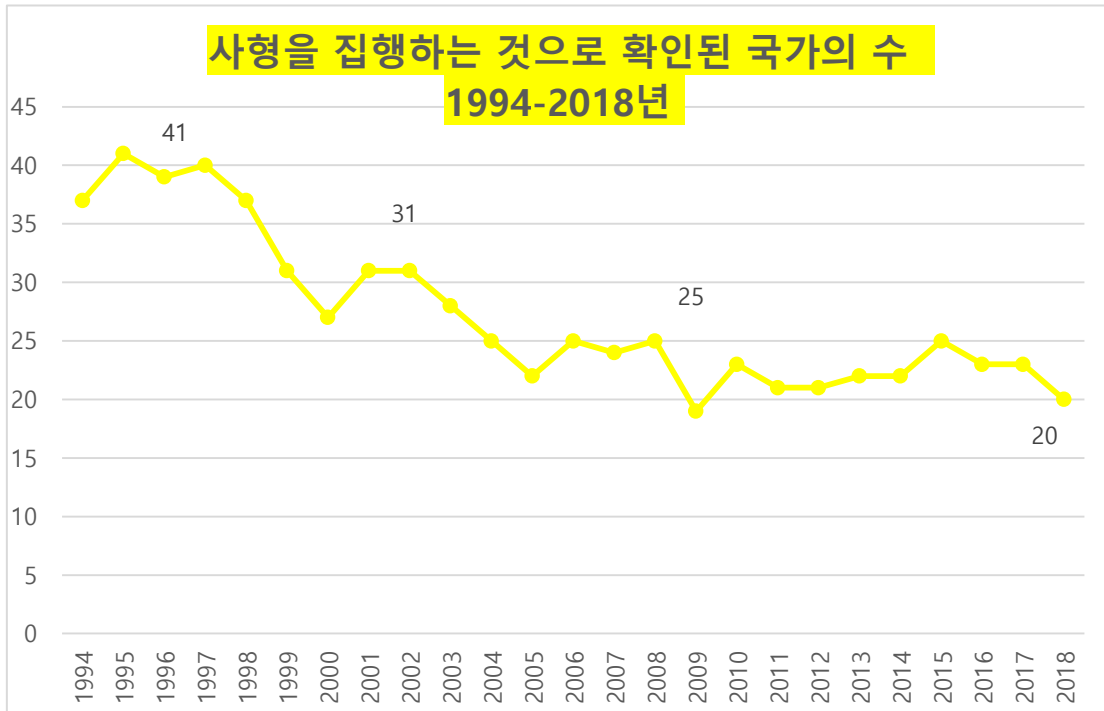
<sup>36</sup> 로이터통신, '감비아 사형 모라토리엄 선언', 2018년 2월 18일, [www.reuters.com/article/us-gambia-justice/gambia-announces-moratorium-on-death-penalty-idUSKCN1G20V2](http://www.reuters.com/article/us-gambia-justice/gambia-announces-moratorium-on-death-penalty-idUSKCN1G20V2)

폐지한 국가는 부르키나파소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지난 6 월 형법에서 사형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경향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진전은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에 대해 유엔 총회가 채택한 7 개의 결의안 투표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유엔 총회가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최초의 결의안을 채택한 2007 년 12 월, 이에 찬성한 국가는 104 개였습니다.<sup>37</sup> 가장 최근인 2018 년 12 월에 진행된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서는 모두 121 개국이 찬성했습니다.<sup>38</sup>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핵심 심의기구인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도덕적, 정치적 무게를 지니며 사형제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보여줍니다.

### 3.2 사형존치국: 고립된 소수

사형집행 국가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30 년 전의 경우 매년 31-41 개국, 20 년 전에는 25-31 개국, 10 년 전에는 20-25 개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8 년 전 세계 사형 보고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sup>39</sup>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 국가의 10%에 해당하는 20 개국뿐입니다. 이들 국가 중 '지속적으로' 즉, 지난 5 년 동안 매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13 개국으로 전 세계의 6%에 불과합니다.

<sup>37</sup> UN 총회 결의안(General Assembly resolution) 62/149. 2007 년 12 월 18 일

<sup>38</sup> UN 총회 결의안 73/175. 2018 년 12 월 17 일

<sup>39</sup> 국제앰네스티, 2018 년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n 2018), 문서번호: ACT 50/9870/2019, 2019 년 4 월,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ct50/9870/2019/en/>

사형과 관련한 수치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는 중국의 경우, 사형 집행의 선두로서 수천 건에 달하는 사형 집행을 감행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8 년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최소 690 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최소 993 건의 사형이 집행된 2017 년에 비해 31%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 년 동안 기록해온 사형 집행 건수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연간 가장 많은 사형 집행 건수를 기록해온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도, 이란은 기록으로 확인된 모든 사형 집행 건수의 3분의 1 이상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악된 모든 사형 중 78%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이라크 등 총 4 개국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고립적인 소수의 국가에서만 사형제도가 사용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뒷받침합니다. 또한 사형 집행 관련 수치와 현황은 이러한 형벌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3.3 사형: 본질적으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처벌

사형 제도는 본질적으로 자의적이고 취약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작용하며, 불완전한 사법 시스템에 의해 작동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3.3.1 취약계층에 끼치는 불균형적인 영향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연구는 취약계층이 효과적인 법정대리를 받는 것을 비롯,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험할 때 더 불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이 종종 재판을 비롯한 사법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법률 상담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피고인은 수많은 경우에 유능한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유지할 수 없고, 재판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법의학 및 의료 전문가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인도 델리에 있는 국립법률대학교(National Law University)는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사형수들의 낮은 문해력 수준과 소외되거나 부재한 사회적 연결망이 때에 따라 사법 기관을 이해하고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계급, 젠더, 카스트, 종교 및 교육 성취 수준 등과 결부되어 이 수감자들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sup>40</sup>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에 관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사형을 감행 받는 데 있어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권력이나 재력 혹은 둘 모두를 이용하거나, 친척이나 친구 관계를 통해, 또는 운이 좋아 피해자의 친인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만이 범죄 피해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사면을 받아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사면을 추진할 수 있는 인맥과 자원이 부족하며, 따라서 사면을 받지

<sup>40</sup> 인도 델리 국립법률대학교, '인도의 사형에 관한 보고서(Death Penalty India Report)', Delhi Press, 2016년 2월, vol. 1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면이 승인된 104명에 대해 국제앰네스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92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가졌습니다.<sup>41</sup>

빈곤 외에도 국적 또한 법정대리에 대한 접근과 사형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법은 외국인의 경우 영사의 추가적 보호와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외국인에게 사형을 부과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일부 국가에서<sup>42</sup> 사법당국이 외국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도 소속 국가의 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확인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체포 순간부터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통역을 지원하지 않은 수많은 사례를 기록해왔습니다.

또한 취약 계층 출신의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영사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영사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자국이 사형제도에 대해 취하는 입장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에서 사형에 직면한 자국민을 변호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뿐 아니라 해당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개입 의지 또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국적은 법률적인 방어 능력과 사형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형 집행의 자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sup>43</sup> 이는 주로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사법 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생명을 자의적으로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sup>44</sup>,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법률 지원과 보호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사형에 직면한 자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자의성이 추가적으로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개인의 국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신적 또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제법과 기준이 심각한 정신적 또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대법원이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러한 개인들에 대해 계속 사형을 선고해왔습니다.<sup>45</sup>

---

<sup>41</sup> 국제앰네스티, 정의라는 이름의 살인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제도(Killing in the name of justice - the death penalty in Saudi Arabia), 문서번호: MDE 23/2092/2015. 2008년 이후의 사면 사례에 관한 언론 기사 분석을 통해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sup>42</sup> 다음문서 참조. 국제앰네스티, 잘못된 사법과정 - 인도네시아의 불공정 재판과 사형(Flawed Justice-Unfair trials and the death penalty in Indonesia), 문서번호: ASA 21/2334/2015, pp.40-45; 국제앰네스티, '정의라는 미명 하의 살인'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Killing in the name of justice' - The death penalty in Saudi Arabia), 문서번호: MDE 23/2092/2015, pp.24-27. 다음 문서도 참조.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UN Doc. A/70/304, 2015년 8월 7일.

<sup>43</sup> 이 사안에 대한 국가의 개입 형태는 다양하다. 다음 문서 참조. UN Doc. A/70/304, *op. cit.*, para.108

<sup>44</sup> 다음 문서 참조.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UN Doc. A/67/275, 2012년 8월 9일, para.25

<sup>45</sup> 다음 문서 참조. 국제앰네스티, 미국, 플로리다주의 어둠 - 플로리다주의 사형(USA: Darkness visible in the sunshine state - The death penalty in Florida), 문서번호: AMR 51/8959/2018), [www.amnesty.org/en/documents/amr51/8959/2018/en/](http://www.amnesty.org/en/documents/amr51/8959/2018/en/)

### 3.3.2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위험

사형제도가 법률적으로 유지되는 한,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전 세계 연례 조사를 통해 2014 년에서 2018 년까지 최소 306 명이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 과정의 결과로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2018 년, 4 개 국가에서 최소 8 명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이집트 (1 명 이상), 쿠웨이트(3 명), 말라위(2 명), 미국(2 명).<sup>46</sup>
- 2017 년, 6 개 국가에서 최소 55 명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중국(1 명), 몰디브(1 명), 나이지리아(28 명), 대만(1 명), 미국(5 명), 잠비아(19 명).<sup>47</sup>
- 2016 년, 9 개 국가에서 최소 60 명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방글라데시(4 명), 중국(5 명), 가나(1 명), 쿠웨이트(5 명), 모리타니(1 명), 나이지리아(32 명), 수단(9 명), 대만(1 명), 베트남(2 명).<sup>48</sup>
- 2015 년, 6 개 국가에서 최소 71 명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중국(1 명), 이집트(1 명), 나이지리아(41 명), 파키스탄(최소 21 명), 대만(1 명), 미국(6 명).<sup>49</sup>
- 2014 년, 9 개 국가에서 최소 112 명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방글라데시(4 명), 중국(2 명), 요르단(1 명), 나이지리아(32 명), 수단(4 명), 탄자니아(59 명), 미국(7 명), 베트남(2 명), 짐바브웨(1 명).<sup>50</sup>

미국의 경우 1973 년부터 현재까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죄로 판명된 사람이 166 명에 달합니다.<sup>51</sup>

### 3.4 입증된 바 없는 범죄 억제 효과

범죄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형이 폐지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형 선고가 재개된 경우에도 범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필요한 것은 치안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들이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라고 촉구하기에도 바쁩니다. 사형 선고가 아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sup>52</sup>

<sup>46</sup> 국제앰네스티, 사형 선고와 집행 - 2018 년(*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018*), 문서번호: ACT 50/9870/2019, [www.amnesty.org/en/documents/act50/9870/2019/en/](http://www.amnesty.org/en/documents/act50/9870/2019/en/)

<sup>47</sup> 국제앰네스티, 사형 선고와 집행 - 2017 년, 문서번호: ACT 50/7955/2018, [www.amnesty.org/en/documents/act50/7955/2018/en/](http://www.amnesty.org/en/documents/act50/7955/2018/en/)

<sup>48</sup> 국제앰네스티, 사형 선고와 집행 - 2016 년, 문서번호: ACT 50/5740/2017, [www.amnesty.org/en/documents/act50/5740/2017/en/](http://www.amnesty.org/en/documents/act50/5740/2017/en/)

<sup>49</sup> 국제앰네스티, 사형 선고와 집행 - 2015 년, 문서번호: ACT 50/3487/2016, [www.amnesty.org/en/documents/act50/3487/2016/en/](http://www.amnesty.org/en/documents/act50/3487/2016/en/)

<sup>50</sup> 국제앰네스티, 사형 선고와 집행 - 2014 년, 문서번호: ACT 50/0001/2015, [www.amnesty.org/en/documents/act50/0001/2015/en/](http://www.amnesty.org/en/documents/act50/0001/2015/en/)

<sup>51</sup> 더 자세한 정보는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참조, <https://deathpenaltyinfo.org/innocence-list-those-freed-death-row>

<sup>52</sup> 넬슨 만델라, '범죄와 폭력에 관한 전국경제발전노동위원회(NEDLAC) 컨퍼런스에서의 대통령 연설', 1996 년 11 월 21 일, [www.mandela.gov.za/mandela\\_speeches/1996/961121\\_nedlac.htm](http://www.mandela.gov.za/mandela_speeches/1996/961121_nedlac.htm)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설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유엔은 사형제도와 살인율 간의 관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유엔은 이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사형이 종신형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할 과학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후에도 그러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증거들은 전체적으로 사형의 범죄 억제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sup>53</sup>

미국 국립학회의 국립연구협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 또한 2012년 4월 보고서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인에 대해 사형의 효과에 관해 현재까지 이뤄진 연구는 사형이 살인율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 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회는 사형제도가 살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 검토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sup>54</sup>

1973년부터 35년 동안 인구 규모가 비슷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살인율을 비교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홍콩의 사형제도 폐지와 싱가포르의 높은 사형 집행률이 살인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sup>55</sup>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행된 연구 또한 사형 및 징역형과 범죄 사이에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처벌이 상당히 다양한 수준으로 전개되어 온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징역, 사형 선고 및 사형 집행 중 어느 것도 살인 발생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사형을 제한하는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수년 동안에는 살인율이 감소하기도 했다.”<sup>56</sup> 특히, 이 연구는 매년 사형이 집행되었던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살인율이 상당히 고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법원은 사형 계속해서 선고했지만 집행은 단 2건뿐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이러한 감소가 살인율에 즉각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살인율은 2003년부터야 선명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sup>57</sup>

인도의 경우 사형과 범죄율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 조사한 포괄적인 연구는 없었지만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살인율은 23% 감소했습니다.<sup>58</sup> 이 기간 중 2004년 이후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의 통계는 사형제도 폐지가 과거에 사형이 부과되었던 범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1975년 인구 10만 명당

---

<sup>53</sup> 로저 후드(Roger Hood), “사형과 이에 대한 범죄학의 새로운 기여 - 유엔 범죄예방 및 통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The ques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new contributions of the criminal sciences to the matter: a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UN Doc. E/AC.57/1988/CRP.7, 1988.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상업적으로 출판되었다. Hood and Hoyle,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Fif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sup>54</sup> 다니엘 S. 나진(Daniel S. Nagin), 존 V. 페퍼(John V. Pepper), “사형과 범죄 억제 효과(Deterrence and the Death Penalty)”, Washington: National Research Council,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12, p. 2

<sup>55</sup> 프랭클린 E. 짐링(Franklin E. Zimring), 제프리 파간(Jeffrey Fagan), 데이비드 T. 존슨(David T. Johnson), “사형, 범죄 억제 및 살인 - 두 도시 이야기(Executions, deterrence and homicide: a tale of two cities)”, 2009년 8월 31일, Columbia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09-206; CELS 2009 4th Annual Conference on Empirical Legal Studies Paper

<sup>56</sup> David F. Greenberg and Biko Agozino,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사형, 구금 및 범죄(Executions, imprisonment and crime in Trinidad and Tobago)”,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11

<sup>57</sup> 데이비드 F. 그린버그(David F. Greenberg)와 비코 아조지노(Biko Agozino), 2011

<sup>58</sup>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전 세계 살인에 관한 연구 - 경향, 배경, 데이터(Global Study on Homicide—Trends, Contexts, Data)”, 2011

살인 건수가 3.09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살인에 대한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전 해인 1980 년, 2.41 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캐나다의 살인율은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이전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7 년의 공식적인 비율은 1.8 건입니다.<sup>59</sup>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범죄 경향과 패턴은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치안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수행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특정한 상황 이외에도 빈곤, 불평등 및 법치를 실행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 폭력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sup>60</sup>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2011 년 ‘전 세계 살인에 관한 연구’<sup>61</sup>에서 살인과 인간개발 및 경제 발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인간 개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살인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소득 불평등이 높은 국가의 경우 소득이 더 평등한 국가에 비해 살인 발생률이 4 배 정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sup>62</sup>

총기 사용 및 주류 허용 여부나 마약 밀매 경로와의 지리적 근접성 등 살인 사건 자체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도 살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sup>63</sup>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서 살인율과 법치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sup>64</sup>, 법의 공포, 법의 평등한 집행 또는 독립적인 사법 집행과 관련된 절차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살인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sup>65</sup>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요인들과 살인 간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직접적인 것은 아니며, 국가의 법치 실행 역량이 사회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sup>66</sup>

---

<sup>59</sup>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 [www150.statcan.gc.ca/n1/en/subjects/crime\\_and\\_justice/crimes\\_and\\_offences](http://www150.statcan.gc.ca/n1/en/subjects/crime_and_justice/crimes_and_offences)

<sup>60</sup>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업무 지침 –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 핸드북(Making them work –handbook on crime prevention guidelines)”, 2010 년 8 월

<sup>61</sup>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전 세계 살인에 관한 연구 – 경향, 배경, 데이터(Global Study on Homicide—Trends, Contexts, Data)”, 2011

<sup>62</sup>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ECOSOC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세계 범죄 경향과 범죄 예방 및 사법 정의 분야에서 새로 등장한 문제와 그 대응책(World crime trends and emerging issues and responses in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UN Doc. E/CN.15/2012/19, 2012 년 2 월 17 일

<sup>63</sup>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전 세계 살인에 관한 연구 – 경향, 배경, 데이터(Global Study on Homicide—Trends, Contexts, Data)”, 2011, p.10.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전 세계 살인에 관한 연구 – 경향, 배경, 데이터”, 2013, pp.65–75

<sup>64</sup> 법치 지수는 “국가 자체를 포함하여 개인, 공공 및 민간 기구와 조직이 공표된 법률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법률이 평등하게 집행되는지, 사법 과정과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 “또한 법치 지수에는 법 최고성의 원칙(principles of supremacy of law), 법 앞의 평등, 법의 공정한 적용, 권력 분립, 의사결정 과정 참여, 법적 안정성, 자의성 배제 및 절차적 및 법적 투명성 등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는 조치에 대한 평가 또한 요구한다.” 다음 문서 참조. 유엔, “분쟁과 분쟁 후 사회에서의 법치와 전반기 정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S/2004/616, para.6.

<sup>65</sup>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세계 범죄 경향과 범죄 예방 및 사법 정의 분야에서 새로 등장한 문제와 그 대응책”, UN Doc. E/CN.15/2012/19, 17 February 2012, p.10.

<sup>66</sup> UN Doc. E/CN.15/2012/19

## 4. 대체 형벌

사형제도 폐지에 있어 대체 형벌은 잔혹한 범죄의 희생자들의 정의에 대한 요구와 국제 인권법과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는 형벌을 정하려는 요구를 조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처벌은 범죄의 정도와 범죄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sup>67</sup>, 형벌 자체나 형벌이 집행되는 방식이 국제적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 제 10 조 제 3 항은 수감제도의 주 목표는 재소자의 교정과 사회 복귀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 징역형과 관련해 국가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재판소가 부과하는 모든 형벌 선고에 대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국제형사법원의 로마 규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법원은 국제 사회가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권을 가지며 이러한 범죄는 다수살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형사법원은 범죄가 매우 중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신형을 선고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종신형이 아닌 징역형의 경우 최장 기간은 30 년입니다.<sup>68</sup> 국제형사법원은 확정된 징역 기간의 3분의 2, 종신형의 경우 25 년을 복역한 후, 감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변화 요인들을 고려하여 감형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 국제형사법원이 감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후에도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sup>69</sup>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에서는 과거에 사형이 선고된 범죄에 대해 장기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몽골은 새 형법에서 2017 년부터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했습니다. 기니와 나우루 또한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했습니다.
- 수리남은 2015 년 개정 형법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살인을 비롯한 중범죄에 대해 임시 징역 기간을 15 년에서 20 년으로 늘렸으며, 연속, 장기 징역 및 종신형의 경우 구금 기간을 30 년에서 최대 50 년으로 늘렸습니다.

더욱이, 사형수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유엔 기준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해당 범죄에 대해 더 가벼운 형벌이 부과되도록 법률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sup>70</sup>

<sup>67</sup> 다음 참조.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방지 협약 제 4 조 제 2 항.

<sup>68</sup>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 77 조 제 1 항.

<sup>69</sup>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정, 제 110 조.

<sup>70</sup> 다음 자료 참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결의안 1984/50(1984 년 5 월 25 일)으로 채택한 사형수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유엔 기준 제 2 항, 자유권규약 제 15 조 제 1 항,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정 제 24 조 제 2 항,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스코폴라 사건 대 이탈리아(*Case of Scoppola v. Italy*, No. 2, Application no. 10249/03), Grand Chamber 판결(2009 년 9 월 17 일), para. 108.

## 5. 결론

이 의견서는 국제법이 오랜 기간에 걸쳐 사형제도가 인권 문제임을 분명하게 인정해왔으며, 최근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경향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국가 현황 분석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이러한 처벌을 사용하는 소수의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며 차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의견서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우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헌법 제 10 조, 제 12 조 제 1 항, 제 37 조 제 2 항 및 제 110 조 제 4 항에 의거하여 사형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